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5592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혁
변	론	종 결 2026. 4. 30.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401,100,9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23. 12. 1.부터 요거트 및 커피의 판매와 관련된 간판, 홍보물, 인쇄물, 광고지, 포장지, 포장용기, 배달전문 앱 플랫폼인 F 및 G에서 "H 역삼점", "H", "[]", "H([])"라는 영업표지 또는 상호의 사용을 중지하는 날까지 1일당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¹⁾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H([])"라는 영업표지 내지 상호(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요거트류 및 커피 등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그 가맹점(이하 'H 가맹점'이라 한다)을 모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들과 사이에 H 가맹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그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자등록

1) 원고들과 피고 C은 2023. 4. 6. 서울 강남구 I, 1층 J호 소재 'H 역삼점'(이하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 취지 제2항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영업표지 내지 상호의 사용금지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피고 D, E을 상대로 2023. 12. 1.부터 그 사용을 중지하는 날까지 1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제2항 부분은 그 영업표지 등의 사용금지를 별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상 위약벌 규정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로 본다.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3. 4. 6.부터 2025. 4. 5.까지, 최초가맹금을 860만 원, 계속가맹금을 월 33만 원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그 중 '갑'은 원고들을, '을'은 피고 C을 지칭한다).

2) 피고 D은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23. 5. 17. 자로 영업신고를 하고, 2023. 5. 19. 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영업표지 사용 등에 관한 분쟁 경위

1) 피고 C은 2023. 9.경 서울 마포구 K 소재 건물 지하 1층(이하 '피고 K 점포'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영업표지와 "L", "M", "N", "O"이라는 영업표지를 함께 게시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C이 피고 K 점포에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 등이 이 사건 가맹계약 제29조 제2항, 제6항 및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2023. 11. 2. 자로 발송하였다.



2. H 역삼점 가맹 해지 사유

가. 상표 무단사용 : 서울시 마포구 K 지1층(상호 : “P” 이후 “타업장”으로 표기)에서 H의 상표 무단사용 금지 위반 (가맹계약서 제29조 2항]

나. 경업금지 위반 : 타업장에서 경업금지 의무 불이행 (제29조 6항 및 39조[경업금지 의무])

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 : 타업장에서 요커의 레시피 사용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위의 사안들(제5장 제34조 2항 1: '음'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은 귀사의 이환 부장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귀사로부터 2023년 11월 30일자로 가맹해지 의사를 통보받아 아래와 같이 위약금, 손해배상 및 가맹해지에 따른 추가 이행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C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D 명의로 변경하고, 가맹점운영권을 피고 D, E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9호, 제23조 제4항,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금지의무 및 가맹점운영권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나. 피고 C은 2023. 9.경부터 이 사건 가맹점 소재지가 아닌 피고 K 점포에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가맹점 소재지와 피고 K 점포에서 'P(Q 또는 N)'이라는 상호로 요거트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9조 제2항, 제39조,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표지 사용범위 제한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C은 2023. 11. 30.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23. 11. 30. 이후에도 F 등 배달 플랫폼에 'H 역삼점'이라고 등록한 상태로 이 사건 영업표지, H 가맹점 제품사진 및 레시피와 메뉴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이는 상표권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라.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과 그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E은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에 따라 피고 C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C과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민법 제760조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 C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마.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401,100,944원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상당액 391,100,944원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 상당액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D, E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4항에 따른 위약벌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날의 다음 날인 2023. 12. 1.부터 "H 역삼점", "H", "[]", "H ([])"라는 영업표지 또는 상호의 사용을 중지하는 날까지 1일당 금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1항)



1)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

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금지의무 및 가맹점운영권 양도금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9호는 피고 C의 준수사항으로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를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23조 제4항은 피고 C이 점포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하거나 임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1항, 제2항은 피고 C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담보제공할 수 없고,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먼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2023. 5. 19. 자로 피고 D 명의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측의 안내 또는 동의에 따라 위와 같은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C이 아닌 피고 D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데까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가맹점운영권 양도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 C이 가맹점운영권을 피고 D, E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만으로



는 피고 D 및 피고 E이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가맹계약상 가맹점운영권 자체를 피고 C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거나 피고 C과 독립된 영업주체로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운영권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영업표지 사용범위 제한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에 관한 재산권이 원고들에게 속함을 전제로, 피고 C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8조에 표시된 이 사건 가맹점 소재지에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간판, 홍보물 및 인테리어 시설물 등에 부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위 영업표지를 판촉·홍보활동 등에 사용하는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제39조는 피고 C이 계약기간 중 원고들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들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43조 제1항은 원고들이 피고 C에게 부여하는 H 가맹점의 개설은 가맹점사업자 1인당 한 개의 가맹점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피고 C이 원고들의 승인 없이 H 가맹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2023. 9.경 이 사건 가맹점 소재지가 아닌 피고 K 점포에 이 사건 영업표지를 게시 또는 부착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표지 사용범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러나 피고 C이 이 사건 영업표지를 피고 K 점포에 게시 또는 부착한 것을 넘어서, 위 점포에서 실제로 원고들의 영업에 해당하는 요거트류 및 커피 등을 판매하였다거나, 위 점포를 H 가맹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맹점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C이 'P'이라는 상호로 요거트 판매점을 운영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2, 13, 17,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P'이라는 상호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 영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피고 C인지 또는 피고 D 등 개인인지, 그 영업 내용이 이 사건 가맹점과 별개로 동일 업종의 점포를 운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등 그 의무 위반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 C이 원고들의 문제 제기 이후 이 사건 영업표지를 내리고 'P'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된 경위도 함께 고려하면, 그러한 'P' 상호 표시만으로 곧바로 피고 C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의 영업과 동일·유사한 업종의 점포를 별도로 경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K 점포에 이 사건 영업표지를 게시 또는 부착한 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영업표지 사용범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 C이 이 사건 가맹계약 제39조 및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위약벌 발생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



건 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D 명의로 마친 행위 및 피고 K 점포에 이 사건 영업표지를 게시 또는 부착한 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위 각 의무 위반 사이에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401,100,944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상당액 391,100,944원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벌 상당액 1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즉, 위 계약 제37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상당액 391,100,944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제37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C이 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맹계약이 피고 C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 제2항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정한 해지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 C의 위 각 의무 위반을 이유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3. 11. 30. 자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이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계약기간 중 원고들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별도로 경영하거나, H 가맹점과 동일·유사한 가맹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벌의 발생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일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및 제37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의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위 의무 위반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피고 D, E의 상법 제401조,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3. 11. 30. 자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표지, H 가맹점 제품사진, 레시피 및 메뉴정보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위 각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1) 관련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피고 C이 먼저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23. 11. 30. 자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들이 2023. 11. 2. 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 후 피고 C이 원고들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주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23. 11. 30. 자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23. 11. 30. 자로 종료시키기로 하



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3. 11. 30. 자로 합의해지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 2257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인 원고들이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 C의 묵시적 합의해지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들이 2023. 11. 2. 자 내용증명에 "귀사로부터 2023. 11. 30. 자로 가맹해지 의사를 통보받아"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내용증명은 원고들이 작성하여 피고 C에게 발송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23. 11. 30. 자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이 원고들에게 계약 종료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 제1항은 계약기간 중 합의해지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2개월 전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해지가 될 때까지는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중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해지 의사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시점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협의 및 합의할 것을 예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계약 종료일, 정산관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 및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라) 특히 원고들이 2023. 11. 2. 자 내용증명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와 함께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문제를 언급하였다면, 이는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피고 C이 손해배상책임 또는 위약벌의 부담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에만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들은 피고 C이 2023. 11. 30. 이후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점도 묵시적 합의해지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히려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로열티 자동이체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고 C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로열티 지급이나 물품 주문을 중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2023. 11. 2. 자 내용증명으로 인해 초래된 거래 단절로 볼 수 있을 뿐, 피고 C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에 동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표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 C이 원고들의 문제 제기 이후 배달앱 등에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내리거나 'P' 상호를 사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과의 분쟁



상황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자체에 동의하였다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문제까지 포함하여 원고들과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상표권, 저작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영업표지, H 가맹점 제품사진, 레시피 및 메뉴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이는 상표권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배달앱 등에서 일정 기간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3. 11. 30. 자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위하여 허락된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보일 뿐, 곧바로 원고들의 허락 없는 상표 사용 또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표지에 관한 상표권자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품사진은 요거트 제품의 내용물, 토핑, 용기 및 배치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촬영 방식은 대체로 그릇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 제품의 색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 관련 소품의 사용 등 음식 제품의 홍보사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일부 제품사진에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5, 1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P' 판매점에서 사용된 사진이 원고들의 제품 사진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거나 그 표현방식의 본질적 부분을 유사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레시피나 메뉴정보는 요거트 제품의 재료, 조합, 제조방법, 메뉴명 또는 상품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 내지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아이디어나 정보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의 이 사건 영업표지, 제품사진, 레시피 및 메뉴정보 등의 사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3. 11. 30. 자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곧바로 권원 없는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품사진은 메뉴의 내용과 형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음식 제품의 홍보사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도와 방식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요거트 제품의 재료 조합, 메뉴 구성, 제품 설명 등도 동종 영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바, 갑 제14, 18, 2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품사진, 레시피 및 메뉴정보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3. 11. 30. 자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표지 사용행위 등이 상표권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취지 제2항)

원고들은 피고 D, E을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4항에 따른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C인바, 이 부분 청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의 위 청구를 피고 D, E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3. 11. 30. 자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이상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06

판사 임성현



별지

H 가맹계약서 역삼점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을”이 “갑”의 ‘H’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H’ 가맹시스템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갑”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갑”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갑”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갑”이 사업자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갑”과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갑”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갑”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9.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갑”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갑”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갑”의 임원교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갑”에 대한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8조 [가맹점의 표시]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1) 점포명 : H 역삼점
- (2) 대표자 : C(주)



(3) 점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R, S건물 J호

(4) 점포 규모 : 약 7평

(5) 영업지역 : 별첨[1]에 표시된 지역

② “을”은 자신의 가맹점을 표시함에 있어서 위 가맹점의 표시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① “갑”은 다음의 영업표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영업표지 명칭	이미지
	

② 전항의 영업표지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에 대한 모든 재산권은 “갑”의 독점적인 권리이고, “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8조에 표기된 “을”의 가맹점 소재지에서 “갑”이 보유한 영업표지를 간판, 홍보물 및 인테리어 시설물 등에 부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

2. “을”이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갑”의 영업표지를 판촉·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권리

③ 전항의 가맹점운영권은 “을”이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소멸된다.

④ “을”은 “갑”의 영업표지를 변경 내지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 계약기간 : [2023년 4월 6일 ~ 2025년 4월 5일]

제23조 (점포의 운영)

① “을”은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개점승인을 받은 점포는 가맹사업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갑”과 협의되



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포는 개점승인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개조하거나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물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점포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하거나 임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2개월 전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해지가 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해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귀책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제29조제1항 (물품 등 공급의 중단)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을”이 제16조 제3항 (개점 점검 및 승인)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 “을”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③ “갑”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5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제9조에서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갑”과 “을”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운영매뉴얼, 전단지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갑”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이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3항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갑”은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갑”은 “본 계약”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17조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을”에게 잔액을 반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갑”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 [손해배상 및 위약금]

①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지직전 12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의 10%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15일 이상 남은 달은 1개월로 산정)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점일로부터 영업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개점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을”이 가맹계약서 제27조(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1항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8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내 제39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제35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제3항을 위반하여 “갑”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경업금지 의무]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점포(타 가맹본부의 가맹점 또는 “을”의 독립점포)를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① “을”은 자신의 경영 마인드 및 직업적성이 반영되어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담보제공(이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양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양도 등”에 앞서 “갑”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갑”이 30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을”이 영업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승인결정 시까지 계약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연체된 채무액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하는 등 양수인이 해당 가맹점을 가맹계약에 부합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갑”이 영업양도 승인 시 “갑”과 “을”은 제35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정산한다.
- ⑤ 영업양도가 승인된 경우 새로운 양수인은 “갑”에 대한 “을”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새로운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⑥ 제5항의 의한 새로운 양수인은 제17조 제1항의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갑”에게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3조 [가맹점의 추가개설 등]

- ① “갑”이 “을”에게 부여하는 ‘H’의 가맹점 개설은 가맹점사업자 1인당 한 개의 가맹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경우, “을”의 신청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신규 가맹계약의 절차에 따라 본 계약상의 가맹점과 별도로 새로운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의 전항의 절차 및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제3자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을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통지 및 동의 방법 등]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서에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경우에는 POS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할 경우 전자적 수단(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 있다.